

#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(남창진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596
----------	-----

발 의 년 월 일: 2023년 03월 28일

발 의 자: 남창진 의원(1명)

찬 성 자: 강석주, 곽향기, 김규남,  
김동욱, 김영철, 김용일,  
김용호, 김원중, 김원태,  
김재진, 김지향, 김태수,  
김혜지, 남궁역, 도문열,  
문성호, 민병주, 박 석,  
박영한, 박춘선, 박철성,  
서상열, 소영철, 송경택,  
신동원, 신복자, 옥재은,  
유정인, 이봉준, 이상욱,  
이영실, 임춘대, 장태용,  
정준호, 최민규, 한 신,  
허 훈, 홍국표, 황철규  
의원(39명)

## 1. 제안이유

- 「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」의 상위법령인 「도로법 시행령」이 2022년 11월 1일 자로 일부 개정됨에 따라 인용 조문을 수정하는 것임.

## 2. 주요내용

- 가. 「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」의 인용 조문 수정함. (안 제9조)

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도로법 시행령」

다. 기타 : 신구조문대비표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##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제2항 중 “영 제71조 제5항과 제6항에 따라”를 “영 제71조 제6항과 제7항에 따라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